# '23년도 1학기 국가근로장학금 금오공과대학교 운영 기준

# 1. 근로장학생 선발 기준

- □ 교내 및 교외근로 선발기준(공통)
  - **사업 기본요건\***을 갖춘 정규학기 재학생으로 한국장학재단 국가 근로장학금 신청자 \* 최근 직전학기 성적70점 이상 취득 및 당해학기 학자금 지원 8구간이하 확인자
  - 학기 중/방학 중 부서별(근로지) 근로장학생 모집기간에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희망부서를 신청한 자
  - o 대학생 청소년 교육지원사업과 중복 참여 불가. 단, 기존 참여 사업 근로종료 및 기관선정 취소 시 참여 가능

#### □ 교내근로

ㅇ 일반교내근로 및 일반교외근로 세부 선발기준

1) 선발기준: 순위방식

1순위	2순위	3순위	4순위	5순위
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자 중 직전학기 미선발자	4구간 이하자	6구간 이하자 중 직전학기 미선발자	6구간 이하자	8구간 이하자 중 직전학기 미선발자

- 부서 신청자 중 상위 순위자가 없는 경우 차순위자순으로 선발
- 동순위가 있을 경우 선발 순서
  - ㆍ해당 부서의 근로 필요시간과 학생의 희망근로시간의 일치 여부
  - · 성적 상위자
- 부서 신청자 중 선발가능자가 없는 경우 타부서 신청자 중 선발
- 2) 대체장학생 선발기준: 당초(신규) 선발 기준과 동일
- 3) 기타사항: 부서별(근로지) 업무 특성에 따라 직전학기 미선발자 선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학생성공처와 사전협의 후 차순위 기준으로 선발 가능

#### ㅇ 봉사유형(장애대학생 지원)

1) 선발기준: 순위방식

1순위	2순위	3순위	4순위
동성	동일 학과	수업시간표 일치 여부	성적 상위자

- 2) 대체장학생 선발기준: 당초(신규) 선발 기준과 동일
- 3) 기타사항: 장애대학생 소속 학과에서 추천 가능

#### ㅇ 봉사유형(외국인유학생 지원)

1) 선발기준: 순위방식

1순위	2순위	3순위
동일학과	수업시간표 일치 여부	성적 상위자

- 2) 대체장학생 선발기준: 당초(신규) 선발 기준과 동일
- 3) 기타사항: 외국인유학생 소속 학과 및 국제교류교육원에서 추천 가능

## □ 교외근로 세부 선발기준

ㅇ 일반교외근로(방학중 집중근로)

1) 선발기준: 순위방식

1순위	2순위	3순위
한국장학재단 매칭 결과	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> 6구간 이하> 8구간 이하	학자금 지원구간이 동일할 경우 성적 상위자

- 예산 범위내로 매칭이 될 경우 매칭된 학생 전원 선발
- 예산 범위를 초과할 경우 순위 방식을 적용하여 예산 범위내에서 선발
- 2) 대체장학생 선발기준: 당초(신규) 선발 기준과 동일

## ㅇ 취업연계유형

1) 선발기준: 순위방식

1순위	2순위	3순위
취업연계 희망자	취업지원팀 일대일 면담 결과 우수자	성적상위자

- 예산 범위내로 매칭이 될 경우 매칭된 학생 전원 선발

- 예산 범위를 초과할 경우 순위 방식을 적용하여 예산 범위내에서 선발
- 2) 대체장학생 선발기준: 당초(신규) 선발 기준과 동일

## 2. 사업운영 및 관리

#### □ 근로장학생 활동관리

- ㅇ (사전교육) 학기중/방학중 부서별 모집 근로장학생
  - 1차) 학교 홈페이지에 장학생 최종 선발 공고 시, 한국장학재단 사전교육자료를 첨부하여 선발된 학생들에게 열람하게 함
  - 2차) 근로지별로 근로지 담당 선생님이 사전교육 실시
- ㅇ (사전교육) 방학중 집중근로장학생
  - 1차) 선발된 학생을 소집하여 한국장학재단 사전교육자료 등으로 사전교육 실시
  - 2차) 근로지별로 근로지 담당 선생님이 사전교육 실시
- ㅇ (간담회) 근로 중 애로사항이 있는 학생의 경우 수시 면담

### □ 근로장학생 자격 관리

- ㅇ 장학생의 학적이 변동(휴학, 자퇴, 졸업 등)될 경우 근로 진행 불가 공지
- ㅇ 학적이 변동될 경우 근로 학생이 근로지 담당자에게 자발적으로 신청하도록 안내

## □ 근로기관 자격 관리

ㅇ 허위근로, 대체근로, 대리근로 등 부정근로 미발생 하도록 안내

## □ 장학금 지급 일정 및 방법

- ㅇ 근무월 다음 달 10일 이내로 지급
- 지급금액은 실제 근무한 시간에 시간당 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하며, 학생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장학금 송금
- o 허위근로 및 부적격자 등에 대해 장학금이 오지급된 경우, 재단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장학금 환수